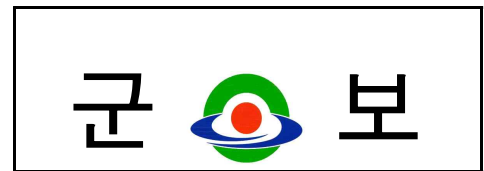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0호 2022. 6. 8.(수)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예천군 곤충연구소 공고 제2022-15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곤충생태원 온라인 예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예매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매표업무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는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수준을 반영한 이용료를 적용하고자 함

다. 곤충생태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곤충생태원을 방문 및 홍보하는 관련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관광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예매시스템 운영 및 환불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항 개정 및 대상자 추가
(안 제9조)

다. 홍보물품 제작 및 무상 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곤충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eers8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곤충연구소

3) 팩스 : 054-652-58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곤충연구소(전화 : 054-650-646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곤충생태원 온라인 예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예매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매표업무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는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수준을 반영한 이용료를 적용하고자 함
- 다. 곤충생태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곤충생태원을 방문 및 홍보하는 관련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 관광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온라인예매시스템 운영 및 환불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항 개정 및 대상자 추가(안 제9조)
- 다. 홍보물품 제작 및 무상 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000천원(2022년 본예산 반영)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6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월 1일”을 “4월 1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터넷 예매 및 환불) ① 곤충생태원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인터넷 예매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형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 및 변경은 방문예정일 전일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전액 환불된다. 다만, 곤충생태원의 휴관 실시 등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미운영 또는 임시휴관 시 곤충생태원 관리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 가능 시간 이후 예매권은 예약 확정되므로 취소가 불가하며 방문 예정일 수입으로 확정한다.

④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변경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홍보물품 제작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곤충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유관기관 및 관람객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관계자
3. 각종 이벤트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곤충생태원 관람료

구 분	관람료		
	일 반	아동·청소년	예천군민 50% 할인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동절기(11월~3월)

모노레일 탑승료

구 분	탑승료	
	일 반	아동·청소년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제9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12호~제14호, 단체, 만 65세 이상, 군인, 장애인, 예천군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곤충생태원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 -----.
1.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1. ----- 4월 1일-----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인터넷 예매 및 환불) ① 곤충생태원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인터넷 예매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형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 및 변경은 방문예정일 전일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전액 환불된다. 다만, 곤충생태원의 휴관 실시 등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미운영 또는 임시휴관 시 곤충생태원 관리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

제9조(무료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포함)

<신설>

<신설>

다.

③ 취소 가능 시간 이후 예매권은 예약 확정되므로 취소가 불가하며 방문예정일 수입으로 확정한다.

④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변경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무료이용) ① -----
----- 경우에 -----

--.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

<u><신 설></u>	<u>자 및 관련 행사</u> 6.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u>자 및 관련 행사</u>
<u><신 설></u>	7.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 및 관련 행사</u>
<u><신 설></u>	8.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u>사람 및 관련 행사</u>
<u><신 설></u>	9.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 및 관련 행사</u>
<u><신 설></u>	10.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u>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u>
4. ~ 7. (생략) <u><신 설></u>	11. ~ 14.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u>제9조의2(홍보물품 제작 등) 군수는</u>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곤충
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유관
기관 및 관람객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관계자

3. 각종 이벤트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하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곤충생태원 홍보물품 제작(안 제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곤충생태원 홍보물품 제작 비용이 3천만원 이내로 예상됨

4. 작성자

- 곤충연구소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정(054-650-6466)